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366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최종윤·최혜영·김진표

임오경 • 이용빈 • 인재근

박홍근 • 윤준병 • 허종식

한준호 · 장경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안 제8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사망자의 재산처리) 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입소자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

다.

-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발생한 무연고 유류금의 경우에는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에 따라 처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사망자의 재산처리) 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 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 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 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입소자의 잔여재산이 「사회복 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 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 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반 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 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 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

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 여 변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 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 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